KOSHA GUIDE

C - 98 - 2014

- (바) 횡단공작물이 전력선인 경우 활선작업, 정전작업을 구분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.
- (사) 지장철탑 이설, 철탑의 지지물인 애자교체, 송전선의 거리조정, 송전선의 파손교체 등과 같은 휴전작업장소 발생 시에는 휴전관계자 회의를 작업 전에 실시하며 안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.





<그림 26> 드럼장 용지조성 및 연선차 앵커, 고정와이어 설치

- (2) 전선설치 작업 시에는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공통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근로자는 장력이 걸린 전선이나 와이어가 만든 각도 밖에서 작업하여야 한다.
- (나) 전선설치작업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질 때는 관리감독자를 임명하여 감시 토록 하여야 한다.
- (다) 메신저 와이어를 사용하여 가선할 때는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고 전선이 늘어져 지면에 닿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라) 지지물 위에서 작업원이 애자련 끝으로 나갈 경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마)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시에는 한쪽 암의 전선만 설치 또는 철거하여 불 평형 장력으로 인하여 철탑이 회전·굴절,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바) 전선을 설치하거나 철거시 다른 모든 설비는 접지하여야 하고 접지가 되지 않았으면 충전된 도체로 취급하여야 한다.
- (사) 설치되거나 철거되는 전선은 항상 감시 하에 두어 전선설치장력의 급격 한 변화를 방지하여야 하며, 장력변화로 인하여 인접설비나 근로자가 손 상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